

동업 해지 및 정산 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하고, 총칭하여 "당사자"라 한다) 간에 체결되었던 동업 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하고, 이에 따른 자산의 정산 및 제반 권리·의무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갑" (인수 / 잔류자)

성명 _____ (인 / 서명)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을" (탈퇴 / 양도자)

성명 _____ (인 / 서명)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제 1 조 (목적 및 해지 합의)

"갑"과 "을"이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동 사업(사업명: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을 목적으로 체결한 기존 동업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0____년 ____월 ____일(이하 "해지기준일"이라 한다)부로 적법하게 해지·종료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 2 조 (정산의 기준)

- 정산은 해지기준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부채 명세는 [별지 1]과 같고,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 지분 계산의 기준 비율은 기존 동업계약상의 손익분배비율("갑" ____%, "을" ____%)로 한다.

제 3 조 (정산금의 확정 및 내역)

- 기존 동업의 종료에 따른 최종 정산금은 금 _____ 원정 (₩ _____)으로 확정한다.
- 제 1 항 정산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본 내역은 당사자의 세무처리 기준이 된다.

구분	항목	금액 (원)	비고
가	출자금의 반환액		
나	미분배 이익(또는 손실)의 정산액		
다	영업권의 대가		
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지분 양도대가		
마	재고자산·비품 등 사업용 자산의 지분 양도대가		
바	기타 (_____)		
	합 계		

3. 당사자는 제 2 항의 구분에 따라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이 달라짐을 상호 확인하며,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이행한다.

제 4 조 (원천징수 및 조세의 부담)

1. 제 3 조 제 2 항 다목의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지급의무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며 그 처리는 다음 중 하나에 따른다.
☐ 정산금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지급한다.
☐ 정산금은 세전 금액으로 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수령자가 부담한다.
2. 제 3 조 제 2 항 라목·마목의 지분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등 거래징수 대상 조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그 밖에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각자 부담한다.

제 5 조 (정산금의 지급)

1. 지급의무자: _____ 수령권자: _____
2. 지급기한: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분할 지급하는 경우 그 일정은 [별지 2]에 따른다)
3. 지급계좌: _____ 은행 / 계좌번호 _____ / 예금주 _____
4. 정산금이 지정된 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____ %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조 (사업권 및 자산의 귀속)

1. 본 계약의 체결 및 제 5 조에 따른 정산금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설비, 재고, 거래처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과 포괄적인 권리·의무는 _____ 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며, 타방은 이에 협조한다.
2. 임대차계약의 승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며, 당사자는 해지기준일로부터 지체 없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3. 인허가, 예금계좌, 카드 단말기, 리스·할부계약, 통신·공과금 등 명의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3]에 따라 처리하며, 탈퇴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에 협조한다.

제 7 조 (채무의 인수 및 탈퇴자의 면책)

1. 해지기준일 현재 본 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_____ 가 인수한다.
2. 다만 채무의 인수만으로는 탈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요함을 상호 확인한다. 인수자는 해지기준일로부터 _____ 개월 이내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제 2 항의 동의를 얻기 전에 탈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인수자는 그 전액을 탈퇴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한다.
4. 인수자는 탈퇴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연대보증 및 담보를 해지기준일로부터 _____ 개월 이내에 해지 또는 교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 8 조 (사업자등록 정정 및 세무 협조)

1. 당사자는 해지기준일로부터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의 변경)를 공동으로 이행한다.
2. 탈퇴자는 해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에 협조한다.

제 9 조 (해지기준일 이전 귀속 조세 등의 부담)

해지기준일 이전의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국세·지방세·4 대보험료 및 그 가산세가 사후에 부과·추징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기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한다. 다만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 10 조 (근로자 및 미확정 채권·채무)

1.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 및 해지기준일까지 발생한 퇴직금·미지급 임금 [별지 1]의 부채에 반영하여 정산한다.

2. 해지기준일 현재 미회수 매출채권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는 [별지 1]에 별도로 기재하고, 사후에 회수되거나 확정된 때에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1. 탈퇴하는 당사자는 동업 기간 중 지득한 상대방의 영업 비밀, 기술 정보, 거래처 정보 등을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탈퇴하는 _____ 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향후 _____ 년간,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및 그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
3. 제 2 항은 「상법」 제 41 조에 따른 경업금지의 기간 및 지역을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것으로서, 동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12 조 (상호 면책 및 부제소 합의)

1. 본 계약에 따른 정산이 모두 완료된 이후,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한 기존 동업관계에 기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상호 간에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다. 다만 본 항은 형사상 고소·고발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며, 법령상 고소권의 사전 포기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상호 확인한다.
3. 제 1 항은 본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알지 못하였던 부외부채, 우발채무 및 제 9 조에 해당하는 조세의 추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본 해지 및 정산 합의가 원만하고 진의에 의하여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 통씩 보관한다.

"갑" 성명: _____ (인)

"을" 성명: _____ (인)

※ 첨부 : 1. [별지 1] 정산 기준 재무상태표 및 자산·부채 명세 2. [별지 2] 분할지급 일정 (해당 시) 3. [별지 3] 명의변경 대상 목록
4. 신분증 사본 각 1 부 5. 인감증명서 각 1 부 (권장)

※ 계약서가 2 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사이에 당사자 전원이 간인한다.

해지·정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면(面)은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이 면을 제외하고 사용하십시오.

1. 정산금은 총액이 아니라 "내역"으로 적어야 합니다

정산금은 구성 항목에 따라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총액만 기재하면 신고 단계에서 반드시 다툼이 발생합니다.

정산금 구성	세무상 취급 (개요)
출자금 반환액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분배 이익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영업권 대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지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고·비품 지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8 조 제 6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후 신규 등록으로 잘못 처리하면 매입세액 공제, 이월결산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인수만으로는 탈퇴자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는 잔류자가 인수한다"고 약정하여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탈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 454 조). 특히 사업자금 대출의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 사례가 매우 흔하므로, 제 7 조 제 4 항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 형사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전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태도입니다. 또한 동업 분쟁에서 문제되는 횡령·배임·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수사와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12 조 제 2 항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규정하였습니다.

5. 경업금지 기간·지역

「상법」 제 41 조 제 1 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 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약정하는 경우에도 20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설정은 무효 또는 축소될 수 있어 실무상 2~3 년이 무난합니다.

6. 지연손해금

정산금은 금전대차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한 경우 민법 제 398 조 제 2 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 이내로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란으로 두면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표준안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세무효과에 따라 반드시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본 서식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세무회계사무소 | 작성 기준일 : 2026. 8.